

【 4 】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10. 8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지방공무원 수당규정 (대통령령 제14074호, 93.12.31) 및 감사원 감사결과 장려수당 지급과 관련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장려수당을 조정

주요골자

1. 분뇨, 오·폐수 처리시설등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장려수당을 인상지급

(안 제4조의 별표 4)

○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

- 현행 100,000원 ⇒ 200,000원

○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

- 현행 100,000원 ⇒ 200,000원

○ 하수·폐수 및 쓰레기업무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

- 현행 100,000원 ⇒ 150,000원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장려수당) 중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

(별표 4)

지 급 대 상	월 지 급 액	비 고
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200,000 원	
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200,000 원	
하수·폐수 및 쓰레기업무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50,000 원	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	안	
제1조 ~ 제3조 (생략)		제1조 ~ 제3조 (현행과 같음)			
(별표4) 장려수당지급구분표		(별표4) 장려수당지급구분표			
지 급 대 상	지 급 액	비 고	지 급 대 상	지 급 액	비 고
시체화장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00,000원		----- ----- ----- -----	200,000원	
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00,000원		----- ----- ---	200,000원	

현			행			개			정			안		
하수·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		100,000원			----- ----- -----			150,000원					

【 5 】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

발의년월일 : 1994. 9. 27.

발 의 자 : 권선안 의원의 1인

주 문

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제안이유

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
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
하여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【 6 】 주내-가남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

발의년월일 : 1994. 10. 5.

발 의 자 : 우충국 의원의 2인

제안이유

주내-가남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공상의 문제를 파악하여
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있음.